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02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소병훈·김교흥·백승아

윤종군 • 이원택 • 박희승

이수진 • 박지원 • 안호영

이언주 · 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최근 1인가구는 물론 세컨 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68만 대로 지난 18년 사이 약 5.6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996년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마련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아파트등 주택단지 내에서 도로상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빈번한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자발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행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를 반영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설 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도록 하여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의 주 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 여야 한다.

-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의 현황
- 2.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조사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5조의2(주차장 설치기준에 대
	한 특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
	<u>상의 주택의 주차난을 완화하</u>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
	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
	<u> 여야 한다.</u>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
	록한 자동차의 현황
	2.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조사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사항</u>